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개정취지 및 신구조문

1. 개정 취지

방위사업청의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 감사결과 제도 보완 필요 사항 반영, 정부 품질보증 내실화와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사항 반영

- 1) 전시 품질보증계획 작성 대상에 방산물자 추가사항 반영(제55조, 제56조)
- 2) 초도양산 품질보증 결과 보고서 제출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제23조)
 - * 초도양산 관련 사항 양산으로 통합되면서 해당내용 삭제됨

나. 방위사업청/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반영

- * 청 함정사업, 자체 전력지원체계 품보 실태 감사결과
- 1) 미 DCMA의 Zero-Based Sampling 적용기준 추가(제20조, 별표 제3-4)
 - * 정부 품질보증계획 수립 시 Sampling 적용방법으로 명시
- 2) 품질보증일지 작성누락 방지를 위한 확인절차 추가(제23조)
 - * 납품 전 누락여부 확인 절차 추가
- 3)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 개선(제19조)
 - * 고위험도 사항에 대하여 정부확인대상으로 선정 원칙
 - *, 2년 이상 장기계약 시 6개월 단위로 위험 평가 재수행 및 품질보증계획 반영

다. 품질보증활동 내실화 및 명확화

- 1) 자동시험장비(ATE) 등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상태 확인절차 추가(제23조)
 - * 초도양산품 및 최초생산품 확인중점사항에 포함, 양산 단계는 필요시 확인
- 2) 시정조치 완료시기 및 4방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4조)
 - * 해당품목 납품 전까지 시정조치 완료 명문화
 - * 제4방법(품질보증활동 중지) 적용대상을 해당 계약건으로 명확화
 - 중단 범위 불명확(전체 계약 v.s. 해당계약)으로 인한 혼선 방지
- 3) 규격불일치품 처리와 형상관리 업무 연계절차 명시(제25조)
 - * 규격불일치품 처리 시 형상관리 절차(방사청 표준화 업무지침)와 연계 가능토록 문구 보완

4) 외부기관 시험 관련 업체 지원과 정부 품질보증 시 업무구분 불명확 해소(제23조, 제27조, 제28조)

- * 제27조는 업체 자체 품질보증 제28조는 정부 품질보증활동 시 적용사항으로 구분
- * 제품확인감사(제23조)의 조항인용 문구 오류 수정

5) 불합격품 처리 절차 제출방법 일원화 및 업무절차 명확화 (제29조)

- * KDS 0050-9000 개정 시 불합격품 처리요구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일원화
- * 불합격품의 관리상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업무절차 명확화

6) 구매계약 특성을 고려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내용구체화(제39조)

- * 구매계약 특성을 고려 내용을 구체화

7) 품질개선의 체계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42조)

- * 분기단위로 품질개선 계획 검토 후 착수, 결과 제출 의무화
- * 품질경영부에서 종합관리 수행

라. 기타사항

1)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8조~제1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별표 제1-3호)

2) 품질보증 위탁된 하도급품에 대한 결과통보 절차 누락사항 보완(제35조)

- * 위탁품 품질보증 활동 완료 후 수탁센터에서 위탁센터로 통보절차 추가

2) 품질기동지원활동 명칭변경 및 업무개선 사항 반영(제40조)

- * 품질기동지원 → 현장품질지원으로 명칭변경
- * 활동대상을 대기업 협력업체 중심에서 신규·취약업체 중심으로 변경

3) 전시 품질보증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보완(제55, 56조)

- * 프로그램 사용법, 비밀작성 요령 등 삭제 및 업무절차 중심으로 재작성